

1. 예산총칙

202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25,316,468	27,759,494
일반회계	855,700,429	25,671,013
특별회계	69,616,039	2,088,481
기타특별회계	69,616,039	2,088,481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11,084,395	332,532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352,632	100,579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291,500	8,74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64,000	16,92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510,710	165,321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14,001	27,42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01,690	21,05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451,497	133,545
수질개선특별회계	38,725,614	1,161,768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4,020,000	120,600

제 2 조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27,525,364천원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1,750,564천원을 포함한다.

제 6 조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4,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 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